

## 닭·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◎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)는 닭·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7일 공포(6개월 이후 시행)하였다.

### ❖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주요 개정내용

- ① 닭·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(제15조의2 및 제60조제1항 제4호의2 신설)
  - 닭·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
    - 닭·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,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
- ②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‘식용란선별포장업체’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(제17조)
  -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신설된 영업인 ‘식용란선별포장업체’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·방역 시설\* 구비 근거 마련
    - \* 예) 계란 운송차량 세척·소독 시설,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
-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‘일시 이동중지 명령’ 조치 가능(제19조의2)
  -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
    - 현재 2~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여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

## 참고 ▶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

구 분	주요 개정 내용
제15조의2 신설 제60조제1항 제4호의2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가가 닭·오리 등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, 입식 규모, 가축의 출하 부하장 등 입식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토록 함</li> <li>-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
제17조 제1항제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의무 부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란의 위생적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신설된 “식용란선별포장업체”에 대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토록 근거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제19조의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가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확진* 전이라도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</li> <li>[*기준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까지 2~3일 소요]</li> </ul> </li> </ul>

